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0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한정애 · 유동수 · 이병진
채현일 · 조인철 · 홍기원
허영 · 정준호 · 강준현
서삼석 · 신영대 · 송옥주
최기상 · 박수현 · 김영배
최혁진 · 천준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

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
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7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되는 투자(투자를 한 날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해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한 날(투자를 한 날의 다음 날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을 “업무집행사원은”으로,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유동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

터 지급받은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4. 업무집행사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임직원(이하 이 호에서 “주요 임직원”이라 한다)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주요 임직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액

5.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49조의14제8항 중 “재무제표 등”을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4. 제249조의7제8항에 따른 통보를 아니한 자(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9조제3항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49조의7제7항(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별표 1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제260호의10부터 제260호

의18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60호의8 및 제260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의8. 제2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9.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6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제9호의4 및 제9호의7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의3,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의무”를 “재무
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제공 및 설명의무”로,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사실”을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제공
및 설명사실”로 한다.

9의3.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4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의5.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의6.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9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9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한 날(투자를 한 날의 다음날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고의 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집행사원의 정보 제공 및 설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1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 제공 및 설명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 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u> <u>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 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 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 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u>
<u><신 설></u>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되는 투자(투자를 한 날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한 날(투자를 한 날의 다음날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⑨ ----- 제8항-----

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
법) ① (생략)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집행사원은 -----

----- 사항을 -----

-.

1.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
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운용 현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와 관련하여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투자하

<u>3. 금전차입 현황</u> <u><신 설></u> <u><신 설></u> 4. (생 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u>는 회사의 자산, 부채, 유동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3. <u>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u> 4. <u>업무집행사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임직원(이하 이 호에서 “주요 임직원”이라 한다)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주요 임직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액</u> 5. <u>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

~ ⑦ (생략)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 ⑬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삭제

13. ~ 41의3. (생략)

<신설>

42. ~ 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재무제표, 집
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13. ~ 41의3. (현행과 같음)

41의4. 제249조의7제8항(제249
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를
아니한 자

42.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2. ~ 9. (생 략) <u><신 설></u> <u>10.</u> (생 략) <u>10의2.</u> (생 략) <u>10의3.</u> (생 략) 11. ~ 21. (생 략) ④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u>10. 제249조의7제7항(제249조의</u> <u>1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u> <u>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u>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u> <u>자</u> <u>10의2.</u> (현행 제10호와 같음) <u>10의3.</u>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u>10의4.</u> (현행 제10호의3과 같음) 11. ~ 2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